# 제일풍경채 운정 A45BL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이전부터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1.12. 이전부터 계속 거주)		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u></u>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7.12.(금)	2024.07.22.(월)	2024.07.23.(화)	2024.07.24.(수)	2024.07.30.(화)	2024.08.02.(금) ~ 2024.08.08.(목)	2024.08.12.(월) ~ 2024.08.15.(목)

# I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u>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2047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 금 충족	1순위( <b>12개</b>	<b>월</b> 이상, 지역별·면적별 0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라,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국물중합/물단중합 꾸준 없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j-jeil45.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 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 / 1, 2순위)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П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7.12.(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2.)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 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2.) 현재 파주시 1년 이상 거주한자 [(2023.07.12.) 이전부터 계속거주자]에게 공급세대의 30%를 우선하여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4.01.1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만,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빌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7.22.(월)	2024.07.22.(월) 2024.07.23.(화)		2024.07.30.(화)	2024.08.02.(금) ~ 2024.08.08.(목)	2024.08.12.(월) ~ 2024.08.15.(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		■ (PC·모바일) 청약홈	■ 제일풍경채 운정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 1463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제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공급(분양)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이상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함)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시 주택과 - 29395호(2024.07.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45BL(목동동)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28층 11개동 총 520세대

[특별공급 311세대(기관추천 53세대, 다자녀가구 52세대, 신혼부부 93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98세대) 포함1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택공급면적(	m²)	기타						특별공급	급 세대수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다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이주대책 대상자 포함)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아등 우선배정 세대수
	01	074.8584A	74A	74.8584	24.0882	98.9466	53.6194	152.5660	56.2894	60	6	6	11	2	11	36	24	4
	02	074.8730B	74B	74.8730	24.0929	98.9659	53.6298	152.5957	56.3004	116	12	12	21	3	22	70	46	6
	03	074.8659C	74C	74.8659	24.0906	98.9565	53.6248	152.5813	56.2951	22	2	2	4	1	4	13	9	2
	04	074.8448D	74D	74.8448	24.0838	98.9286	53.6096	152.5382	56.2792	12	1	1	2	-	2	6	6	1
	05	074.8783E	74E	74.8783	24.0946	98.9729	53.6336	152.6065	56.3044	10	1	1	2	-	2	6	4	1
2024000278	06	084.9659A	84A	84.9659	27.3407	112.3066	60.8592	173.1658	63.8897	64	6	6	11	2	12	37	27	4
	07	084.9702B	84B	84.9702	27.3420	112.3122	60.8622	173.1744	63.8930	15	2	2	3	-	3	10	5	1
	08	084.9829C	84C	84.9829	27.3461	112.3290	60.8713	173.2003	63.9025	108	12	11	19	3	21	66	42	4
	09	084.9243D	84D	84.9243	27.3273	112.2516	60.8294	173.0810	63.8584	59	6	6	10	2	11	35	24	3
	10	084.9511E	84E	84.9511	27.3359	112.2870	60.8485	173.1355	63.8786	54	5	5	10	2	10	32	22	2
				520	53	52	93	15	98	311	209	28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대지지분은 「주택법」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세대당 대지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공동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이주자대책 관련 특별공급 대상자수가 변경될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배정 세대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74.8584A	074.8730B	074.8659C	074.8448D	074.8783E	084.9659A	084.9702B	084.9829C	084.9243D	084.9511E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74A	74B	74C	74D	74E	84A	84B	84C	84D	84E

<sup>※</sup>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	표기)	74A	74B	74C	74D	74E	84A	84B	84C	84D	84E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1	1	-	-	-	1	-	1	1	1	6
	- 국기 <b>모</b> 준시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1	-	-	1	-	1	-	1	5
		경기도	1	3	1	1	1	1	1	2	1	1	13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	-	-	1	-	1	1	-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인천광역시	-	1	-	-	-	-	-	1	-	1	3
	10년 이	· 상 장기복무군인	1	2	-	-	-	1	-	2	1	1	8
	중소	기업 근로자	1	2	-	-	-	1	1	2	1	-	8
	북	한이탈주민	1	1	-	-	-	-	-	1	1	1       1         -       1         1       1         1       -         -       1         1       -         1       -         -       -         3       3         3       2         10       10         2       2         11       10	4
	이주대책	대상자(철거주택)	-	-	-	-	-	-	-	1	-	-	1
다자녀가구	파주시 경기도 6개월 (	1년 이상 및 기상 계속 거주자 (50%)	3	6	1	1	1	3	1	6	3	3	28
특별공급	서울특별 경기도 6개월	시, 인천광역시 및 실 미만 거주자 (50%)	3	6	1	-	-	3	1	5	3	2	24
	신혼부부 특	별공급	11	21	4	2	2	11	3	19	10	10	93
	노부모부양 특	· 별공급	2	3	1	-	-	2	-	3	2	2	15
	생애최초 특	별공급	11	22	4	2	2	12	3	21	11	10	98
	합 계		36	70	13	6	6	37	10	66	35	32	311

<sup>※</sup>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금액		계약금	<del>1</del> (20%)	중도금(60%)						잔금(20%)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충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10%)	2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네시비	신국의	합세	계약 시	2024.09.13.	2024.11.11.	2025.05.12.	2025.11.10.	2026.05.11.	2026.09.10.	2027.01.11.	합구시정된
		2층	4	158,460,000	282,540,000	441,0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88,200,000
		3층	4	158,460,000	297,540,000	456,0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91,200,000
74A	60	4층	4	158,460,000	304,540,000	463,0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92,600,000
		5~9층	20	158,460,000	315,540,000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94,800,000
		10~16층	28	158,460,000	323,540,000	482,0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96,400,000
		2층	6	158,491,000	276,509,000	435,0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87,000,000
		3층	6	158,491,000	286,509,000	445,0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89,000,000
7.15		4층	6	158,491,000	293,509,000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90,400,000
74B	116	5~9층	30	158,491,000	300,509,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91,800,000
		10~19층	60	158,491,000	307,509,000	466,0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93,200,000
		20층 이상	8	158,491,000	312,509,000	471,0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94,200,000
		2층	2	158,476,000	247,524,000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81,200,000
		3층	2	158,476,000	256,524,00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83,000,000
74C	22	4층	2	158,476,000	263,524,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84,400,000
		5~9층	10	158,476,000	270,524,0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85,800,000
		10~13층	6	158,476,000	278,524,000	437,0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87,400,000
		2층	1	158,432,000	247,568,000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81,200,000
		3층	1	158,432,000	256,568,00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83,000,000
74D	12	4층	1	158,432,000	263,568,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84,400,000
		5~9층	5	158,432,000	270,568,0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85,800,000
		10~13층	4	158,432,000	278,568,000	437,0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43,700,000	87,400,000
		2층	1	158,503,000	242,497,000	401,0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80,200,000
		3층	1	158,503,000	252,497,000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82,200,000
74E	10	4층	1	158,503,000	259,497,00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83,600,000
		5~9층	5	158,503,000	266,497,000	425,0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85,000,000
		10~11층	2	158,503,000	273,497,000	432,0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86,400,000

		2층	4	179,856,000	326,144,000	506,0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01,200,000
		3층	4	179,856,000	342,144,000	522,0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04,400,000
84A	64	4층	4	179,856,000	350,144,000	530,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06,000,000
		5~9층	20	179,856,000	364,144,000	544,0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08,800,000
		10~18층	32	179,856,000	372,144,000	552,0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10,400,000
		2층	1	179,865,000	306,135,000	486,0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97,200,000
		3층	1	179,865,000	321,135,000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00,200,000
84B	15	4층	1	179,865,000	330,135,000	510,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2,000,000
		5~9층	5	179,865,000	344,135,000	524,0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04,800,000
		10~16층	7	179,865,000	352,135,000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06,400,000
		2층	4	179,892,000	317,108,000	497,0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99,400,000
		3층	4	179,892,000	328,108,000	508,0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01,600,000
946	100	4층	4	179,892,000	336,108,000	516,0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03,200,000
84C	108	5~9층	20	179,892,000	344,108,000	524,0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04,800,000
		10~19층	40	179,892,000	352,108,000	532,0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06,400,000
		20층 이상	36	179,892,000	357,108,000	537,0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07,400,000
		2층	3	179,768,000	294,232,000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94,800,000
		3층	3	179,768,000	305,232,000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97,000,000
010	59	4층	3	179,768,000	313,232,000	493,0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98,600,000
84D	59	5~9층	15	179,768,000	321,232,000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00,200,000
		10~19층	27	179,768,000	329,232,000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01,800,000
		20층 이상	8	179,768,000	334,232,000	514,0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02,800,000
		2층	2	179,825,000	294,175,000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94,800,000
		3층	2	179,825,000	305,175,000	485,0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97,000,000
84E	54	4층	2	179,825,000	313,175,000	493,0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98,600,000
0 <del>4</del> E	) <del>4</del>	5~9층	10	179,825,000	321,175,000	501,0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00,200,000
		10~19층	20	179,825,000	329,175,000	509,0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01,800,000
		20층 이상	18	179,825,000	334,175,000	514,0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02,800,000
				70-131 -		-1	- 1 1 11 1 1 1		0101010 111		61 - 11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이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청약 및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단지 내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사업지 주변현황(개발현황 등)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조건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납부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주말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i-ieil45.co.kr)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 의거, 주택 구입 비용(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비용 등)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	· <b>첨자발표일</b> 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7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b>	<b>격</b>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취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I.O.E.W.I.				
	구분	파주시 및 경기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m² 이전 전용면적 102m² 이		25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02m 이 전용면적 135m² 이	-	400만원 700만원	 600인원 1,000만원				
				,				
		500만원 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		1,500만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3세대**)

IV-1

IV-2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 ■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 이주대책대상자(철거주택) : LH경기북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
당첨자 선정방법	<ul>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제3항)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파주시 및 경기도 물량의 낙첨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거주자 우선공급기준은 미적용됨.

###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 비고	
매심앙축	동매점	기준	점수	네고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비디그 서(2)	_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1년 이상 ~ 5년 미만	5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93세대**)

IV-3

구분			내용					
대상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	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노권(서울특별시 ■ ② <b>순위</b>	, 인선광역시, 경기노 6개월 미	만 거주자)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지	· 사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12.(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2-	ਜ <b>ਾਦ</b>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7 7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비고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干当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 「농지법」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7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등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회재가 건택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 IV-4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①지역 : 경쟁이 있을 경인천광역시, 경기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무으로 판명될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	우 모집공고일 기준 기도 6개월 미만 거 한 규칙」별표1(가 경우 부적격 당첨 기 용급에 관한 규칙」		하고, 경쟁이 있는 기준으로 당첨지 약신청자에게 있음	· 경우 추첨으로 선정 사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 음	기재 오류에 의한 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3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당첨자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Dł				
선정방법		35	0명	5	<u> 4명</u>	25			
	② 부양가족수		1명 2명	10	5명 6명 의사	30			
			2명 3명	15	6명 이상	35			
				20		10			
		47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			
				2	9년 이성 ~ 10년 미년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 12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년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2년 이성 ~ 3년 미년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성 ~ 12년 미년 12년 이상 ~ 13년 미만	13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4년 미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3년 미년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5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년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5년 이성 ~ 6년 미년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성 ~ 15년 미년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7년 미인 7년 이상 ~ 8년 미만	9	13년 역경	17			
			/년 이성 ~ 8년 미만 ※ <b>본인 청약가점 점수</b> = (	1 -					
		+1 .10#1 0! <b>-</b> -'-'							
			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	서숙 가입기간 점	경수들 압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7			<b>±</b> 1					
			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			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비고			노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98세대**)

IV-5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안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는 60㎡'이하 주택형에만 청약이 가능하여 당 사업지는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 ■ ①소득구 단계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 ·분 소득구분	지역 → ③추첨 	내용				
	1단계	_ , , c 신생아 우선공급 (15%)		대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②지역 :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	없이 모집공고일 기준 파주	당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수도권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7.12(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エライモ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401 71 7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비고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건축물	지자체장( 주택 - 토지가액( 단, 아래	기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그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토지	단, 아래 : * 「농지법」 소유자로 * 「초지법」 소재지오 * 공부상 <u>-</u> * 종중소유 경우로서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7 . 등재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록,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팅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	에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있는 경우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 이 경과하 2 <b>개월</b>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 축에 가입하여 <b>12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 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	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은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자격요건	구 분	파주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m²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l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자	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 ②가점

당첨자 선정방법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베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호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채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기족관계증명서, 구민등록표조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VI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구 분		일 정	방 법	장 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4.07.22.(월)	견본주택 (10:00~14:00)		•제일풍경채 운정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번지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2024.07.23.(화)	09:00~17:3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순위 청약신청	2024.07.24.(수)	09:00~17:30	· 현디첫 영국 (PC 모든 드마트폰)	- 스마트폰 : 청약홈 앱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당첨자 발표	2024.07.30.(화)	-	・청약당첨조회 (PC 또는 스마트폰)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홈 앱

##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30.(화) ~ 2024.08.08.(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4.07.30.(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서류제출 일정 및 자격검수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대상자	접수 장소
내용	2024.08.02.(금) ~ 2024.08.08.(목), 7일간 / 10:00 ~ 16:00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제일풍경채 운정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번지
유의사항	<ul> <li>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함</li> <li>당첨자 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을 방문,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li> <li>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li> <li>당첨자(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경우에는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음을 들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저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원이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원이로 사람시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바랍니다.</li> <li>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인 위원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되번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li> </ul>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가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적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를 바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본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레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반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기간이 경과하고계존 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예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견본주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 경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함 이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대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 하는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나면 폐기합니다.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sup>※</sup>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예비순번 순 등으로 서류접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은 홈페이지(http://www.pj-jeil45.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sup>※</sup> 특별공급 청약 시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견본주택 방문 청약인 경우 상기 해당 접수유형별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표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투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 1.0 1)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으로 대체, 대리인 계약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통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단신부임)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서루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고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서류	유형			*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견본주택 비치		
7206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li>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일반공급		0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li>직계존속: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li> <li>직계비속: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가점제 당첨자)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1 12 1100 1(0:11)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서류유형				**************************************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LA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 : 계약자 본인발급용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0	신분증,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sup>※</su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소

<sup>-</sup>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sup>-</sup>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sup>※</sup>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세무서 - 해당직장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계속적인 프리랜서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방문판매원 등)	신규 프리랜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계약서 ② 해당기간의 해촉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비정규직,	계속적인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직 근로자	신규 근로자	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세무서
국'	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2023.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견본주택 비치 - 세무서

<sup>※</sup>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 이즈니르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해당직장 - 홈택스	

<sup>※</sup>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sup>※</su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up>※</su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sup>※</sup>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sup>※</sup>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표4.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부동산소유현황"이 이느 겨오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①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있는 경우	추가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집합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개별공시지가확인서	(www.wetax.go.kr) ② 주민센터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별 <sup>무</sup>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첫제로 청양하고 자사기즈 추조은 의존체와 하는 주택공구시청자는 사기 서로로 바드시 제축해와 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sup>※</sup>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8.12.(월) ~ 2024.08.15.(목), 4일간	제일풍경채 운정 견본주택
(일반공급/특별공급)	(10:00 ~ 16:00)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63번지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	유형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0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 통지)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본인 계약 시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0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0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견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0		인지세(정부수입인지)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대리계약 시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추가 사항		0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sup>※</sup>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7.1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분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방법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분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sup>※</sup>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Sh수협은행	1010-2562-4354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 ※ 공급대금(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801동 201호 홍길동: 80102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1.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2.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권은 무효 처리됨.
- 부부외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대출이자만 해당됨), 입주 시 사업주체가 대납했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출취급기관과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자후불제 적용 불가)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VIII-1

# 발코니 확장 계약

###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 =/ =
ᄌᄄᆝᅕ	바그나 하자 고니그에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주택형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시	2024.11.11	입주지정일
74A	6,940,000	694,000	694,000	5,552,000
74B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74C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74D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74E	5,230,000	523,000	523,000	4,184,000
84A	7,490,000	749,000	749,000	5,992,000
84B	6,340,000	634,000	634,000	5,072,000
84C	6,260,000	626,000	626,000	5,008,000
84D	9,300,000	930,000	930,000	7,440,000
84E	9,210,000	921,000	921,000	7,368,000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	Sh수협은행	1010-2562-4407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합니다. (예시 801동 201호 경우, 입금자명을 '8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 선택 및 시공이 일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①주택형별 단위세대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비확장세대의 발코니에는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③비확장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비확장세대의 주방발코니 상부는 배관 노출 및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⑤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 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비확장 세대의 거실 우물천장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⑦비확장 세대의 경우 창호 및 발코니 난간의 높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하거나 그 후 개별적인 발코니 공사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①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함으로써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입주자에게 불편을 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민원발생시 민원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②사업주체가 사용검사 후 계약자는 발코니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시공한 부위의 하자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③계약자가 발코니 창틀을 개별시공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결로 및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 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 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 세대 내의 부분의 단열재추가설치로 인하여 확장세대는 천장형에어컨 위치(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우물천장 깊이, 커튼상자 깊이, 등박스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되고, 천장 높이 일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상하좌우)가 비확장세대일 경우 비확장부분과 접한 확장세대는 비확장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이중창틀,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Ⅷ-2 추가 선택품목 계약

#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선택안		설치개소	M +1 Q1 +1	7.7.7.0#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모달	델명 (제조사 : 삼성	)
선택인	주택형	걸시개조	설 치 위 치	공급금액	계약시	2024.11.11	입주지정일	실명	실내기	실외기
		2511	ZIAL OLH	2 000 000	300.000	300.000	2.420.000	거실	AJ072BN1PBC1	AJ030MXH
		2대	거실+안방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안방	AJ032BN1PBC1	NBC1
	74m² (A,B,C,D,E)							거실	AJ072BN1PBC1	AJ050MXH
	(,,,,,,,,,,,,,,,,,,,,,,,,,,,,,,,,,,,,,,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안방	AJ032BN1PBC1	
								침실1,2	AJ020BN1PBC1	NBC1
								거실	AJ072BN1PBC1	AJ040MXH
		3대	거실+주방+안방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안방	AJ032BN1PBC1	NBC1
일반형	84 m²							주방	AJ020BN1PBC1	INDCT
	(A,B,C,D,E)				790,000	790,000		거실	AJ072BN1PBC1	AJ050MXH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900,000			6,320,000	안방	AJ032BN1PBC1	NBC1
								주방/침실1,2	AJ020BN1PBC1	INDCT
		84A 6대				970,000	7,760,000	거실	AJ072BN1PBC1	
	844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선택 불가	9,700,000	970,000			안방	AJ032BN1PBC1	AJ060MXH
	04/			3,700,000	310,000	370,000		주방/침실1,2/	AJ020BN1PBC1	NBC1
								알파룸	AUGZODINII DCT	
		2대	거실+안방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거실	AJ072BN1PBC1	AJ030MXH NBC1
	7.42	2-1						안방	AJ032BN1PBC1	
	74m² (A,B,C,D,E)							거실	AJ072BN1PBC1	AJ050MXH NBC1
	(,,,,,,,,,,,,,,,,,,,,,,,,,,,,,,,,,,,,,,	4대	거실+안방+침실1+침실2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안방	AJ032BN1PBC1	
								침실1,2	AJ020BN1PBC1	
								거실	AJ072BN1PBC1	AJ040MXH
고급형		3대	거실+주방+안방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안방	AJ032BN1PBC1	
(공기청정형)	84 m²							주방	AJ020BN1PBC1	NBC1
(5/18/8)	(A,B,C,D,E)							거실	AJ072BN1PBC1	AJ050MXH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000,000	900,000	900,000	7,200,000	안방	AJ032BN1PBC1	NBC1
								주방/침실1,2	AJ020BN1PBC1	
		4A   6LH						거실	AJ072BN1PBC1	
	84A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알파룸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안방	AJ032BN1PBC1	AJ060MXH
	047		※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선택 불가	11,000,000				주방/침실1,2/	AJ020BN1PBC1	NBC1
								알파룸	AJOZODINII DCI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2) 가전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구분	적용사항 적용사항	모델명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TE	격증시용	<b> </b>	THE	0867	계약시	2024.11.11	입주지정일	-1 -
	LG오브제	BC1L2AA(냉장고)	74 m² (A, B, C, D, E)	6,600,000	660,000	660,000	5,280,000	색상 선택불가
주방	주방 [냉장고(1도어)+냉동고(1도어)+김치냉장고(1도어)]+ 시스템수납장 포함	BC1F2AA(냉동고) BC1K2AAC(김치냉장고)	84 m² (A, B, C, D, E)	6,800,000	680,000	680,000	5,440,000	/ 베이지색 단일 옵션

	고급형 주방후드(하츠)	ILH-46G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삼성 인덕션(3구)	NZ63T5701AK		700,000	70,000	70,000	560,000	-
	삼성 전기오븐	NQ36A6555CK	전 타입	450,000	45,000	45,000	360,000	-
	LG 식기세척기	DIE6PT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안방 비데	ALB-3600EL	전 타입	150,000	15,000	15,000	120,000	-
안방	전동 빨래건조대 ※ 해당 옵션 선택 시 발코니1 기본조명 미설치	N4010-R	74A, 74B, 84m²(A,B,C,D,E)	150,000	15,000	15,000	120,000	-

<sup>※</sup> 상기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가전제품의 색상 및 모델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계약자의 취향에 따른 색상 및 모델사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인테리어 (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사항	즈태 청	고그그애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н э
十七	식용사장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시	2024.11.11	입주지정일	비고
	현관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전 타입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싫고		74A, 74B, 84A, 84B, 84C	600,000	60,000	60,000	480,000	-
현관	현관 팬트리(시스템가구)	74C, 74D, 74E	400,000	40,000	40,000	320,000	-
		84D, 84E	700,000	70,000	70,000	560,000	-
		74A, 74D, 74E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복도 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74B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
		84B, 84C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
		74A, 74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74C, 74D, 74E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
	에디톤(거실+주방+복도 바닥)	84A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
		84B, 84C, 84D, 84E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
		74A, 74B, 84D, 84E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74C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
	거실아트월1(TV뒷벽)	74E	900,000	90,000	90,000	720,000	-
기시/ㅂㄷ		74D, 84A, 84B, 84C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거실/복도		74A, 74B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거실아트월2(소파 뒷벽)	74D, 74E, 84A, 84D, 84E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84B, 84C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
		74A, 84A	800,000	80,000	80,000	640,000	-
	HENEN	74B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복도아트월 	74C, 74E, 84B, 84C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74D	900,000	90,000	90,000	720,000	-
		74A	700,000	70,000	70,000	560,000	-
		74B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복도가구 FIX 판넬	74C, 84A	900,000	90,000	90,000	720,000	-
		74D, 74E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84B, 84C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84D, 84E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
침실1(작은방)	불박이가구 -	74m²(A,B,C,D,E)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
급 된 ( 국 <del>단</del> 8 )	트 ㄱ Y/ I I	$84m^2(A,B,C,D,E)$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74m²(A,B,C,D,E), 84A, 84B, 84C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파우더장	74m²(A,B,C,D,E) 84A, 84B, 84C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84D, 84E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
안방/드레스룸		74A, 84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시스템가구	74B, 74D	900,000	90,000	90,000	720,000	-
		74C, 74E, 84B, 84C	700,000	70,000	70,000	560,000	-
	드레스룸1(도어+시스템가구)	84D, 84E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
	드레스룸2(도어+시스템가구)	84D, 84E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
		74A, 74B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
		74C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
	고급 장식장	74D, 74E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주방 FIX 판넬 포함
		84B, 84C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
		84D, 84E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
	대면형 주방(아일랜드장+장식장+주방팬트리 1, 2 도어)	84A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
		74A, 74C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
	조비 사회 범센 에지나이트 사트	74D, 74E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
	주방 상판+벽체 엔지니어드스톤 (팝업콘센트+상부장 간접조명 포함) ※ 84A타입은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 선택 가능	84A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주방	※ 84A다립는 대단영 구성 선택 시 엔지디어트스본 선택 기능   	84B, 84C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
		74B, 84D, 84E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
		74m²(A,B,C,D,E)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84m²(A,B,C,D,E)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주방 팬트리(도어+시스템가구)	74C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주방 FIX 판넬 포함
		84D, 84E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주방팬트리1(시스템가구) ※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선택 가능	84A	700,000	70,000	70,000	560,000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주방팬트리2(시스템가구) ※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선택 가능	84A	700,000	70,000	70,000	560,000	대면형 주방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 조명+실링팬)	74A, 84D, 84E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
	※ 해당옵션 선택 시 거실 기본조명 미설치	84A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
조명	주방 우물천장	74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리니어 조명+식탁 마그네틱조명+흡음판넬) ※ 해당옵션 선택 시 주방(식탁) 기본조명 미설치 ※ 84A 타입은 대면형 주방 선택 시 선택 가능	84A, 84D, 84E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

거실/주방 우물천장	74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
(리니어 조명+식탁 마그네틱조명+흡음판넬+실링팬)	74C, 74D, 74E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
※ 해당옵션 선택 시 거실/주방(식탁) 기본조명 미설치	84B, 84C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
라인조명(거실 소파 뒷벽+복도)	74A, 74D, 84A	600,000	60,000	60,000	480,000	-
다근ㅗᆼ(기글 ㅗ쒸 잣ㅋ+ㅋㅗ) 	74E	800,000	80,000	80,000	640,000	-
	74B, 84B, 84C, 84D, 84E	600,000	60,000	60,000	480,000	-
라인조명(복도) 	74C	500,000	50,000	50,000	400,000	-

#### (4)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Sh수협은행	1010-2562-4483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801동 2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8010201홍길동'으로 기재)

#### (5)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사양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기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에디톤, 엔지니어드스톤, 타일 등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 및 착수 이후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는 추가선택품목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금액은 거실스탠드, 안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안방 벽걸이용 에어컨)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될 수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는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VⅢ**-3

# 마이너스 옵션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침실,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강화석재> 현관, <타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del></del>	벽지, 벽 도장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주방 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 몰딩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일반가구	신발장, 기타수납장	-
주방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가스쿡탑 등 가전제품,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배관 배선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하향식피난구실 도어, 실외기실 도어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1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총 분양가격에 마이너스 옵션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74A	74B	74C	74D	74E	84A	84B	84C	84D	84E
마이너스 옵션금액	30,247,000	30,253,000	29,924,000	29,916,000	29,929,000	34,332,000	34,333,000	34,895,000	34,315,000	34,881,000

-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ㆍ품질관리ㆍ시공관리ㆍ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 규정에 따라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제52조,「건축법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본형(비확장) 기준이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 공사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IX 단지 여건 등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 본 공고로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 '주택급리에 관한 규칙, 이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 · 선가정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중보통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자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문주택 및 '한 경약 및 계약 전 사업지를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해요시설 위치, 도로 소용, 월조 조망 등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시 인주자 요집공고로 및 분양계약시와 기타 함보통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및 보안계약시와 기타 함보통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수자 모집공고를 위하여 선행사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숙자하고 정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약 '주택법 시방부지를, 제3조제항에 의가한 경미한 사망의 변경은 계약자인 '발표 등의 없이 사다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플페이지 및 홍보물 등의 각종 인쇄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듣기 위해 제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F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듣기 위해 제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F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듣기 위해 제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F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들기 위해 제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F시도 등은 기략적인 이하를 들기 위해 제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로), 보기에 자연되는 자연되는 가입하는 소수점 변해 자연되는 다면적 계산상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리보고존등이 및 인전등기는 입전용의 관계정인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면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이지로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법할 수 있습니다.  • 보이지는 일본에 계약자에게 가려 사유가 있습니다.  • 보이지는 문제를 위해 수집 가입자에 가려 사유가 있습니다.  * 보상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가려 사유가 있습니다.  • 보이지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우기관, 사공사 등에서 예약관리 및 주후 주요:  보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가려 사유가 있습니다.  * 제약제 기계 보장 기계 등의 유명기 및 가입자 보안 기계 등의 유명기 및 수준 유명을 가입하는 가입하는 가입 사용기 보고를 보고하지 가입을 수 있으며 이해 만든 보상을 기계 등을 가입하는 가입하는 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 만든 사용자의 가입적 및 지문 이태되었다.  * 본다고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하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긴 민준공은 입주 예정 시원된 사업주체 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된 본다고를 포함한 인공 사업의 발생으로 사용자의 대통의 및 세단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입별 동호 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장악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위인터라이 가입해 및 제안 가입을 제상하는 제상을 제공할 가입 사업 기계 등의 제공에 대한 외계 기관 전략에 보안하는 가중 상황위인터라이 시원을 제공하고 하는 사업계획이 내용 를 많은 간의 시생계 본 시원 기계 등에 가입하면 된 대한 기계 등에 가입하면 된 등을 위한 기계 등에 가입하면 되었다.  * 환경 사용자의 및 개약 장소에서는 발생하는 가중 상황위인터라이 시원에서 보통 제공하고 하는 사업계획이 내용 등 같은 법 시행자의 제공하고 하는 사업계 및 제문 등 같은 비전 시원계 등에 환경 기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유의 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계작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저충부 석재, 줄눈, 도장 디자인, B)/CI, 상부층 장식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에 의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에 의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충 부분이 있을 시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장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에기지 못한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로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있습니다. 대한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접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강이 있거나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 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4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기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함 예정입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사업 부지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활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자연재해, 문화재 발견 및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 면적은 법적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 •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파주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CG,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동측에는 연결녹지 및 40m도로가 위치하며, 서측에는 21m도로, 남측에는 문화공원3, 북측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주상복합, 서측 중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예정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공 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도로, 공원, 완충녹지 등) 간 레벨 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남측에 문화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 조성 계획(변경 포함), 부지 높이(레벨), 여건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외부에 계획된 문화공원과 연결 보행로 위치 및 연결동선 개소 등은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보행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인접한 808동, 809동, 810동, 811동은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동측에 연결녹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와 연결녹지 사이 방음벽 설치 예정이므로 연결녹지와 동선 연결이 불가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결녹지의 레벨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주변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현황 수 없습니다.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지를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 문발1일반산업단지, 문발2일반산업단지, 신촌일반산업단지, 파주춬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교하중앙공원, 북동측에는 파주 시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li>사업지 인근 청룡두천 위치 및 수변공원 조성 예정으로 향후 관리 상태에 따른 악취, 해충,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지구 북서쪽에 GTX 고속열차의 차량기지 설치예정으로 인한 차량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본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본선터널에 인접하여 철도관련 개량 공사,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지구 인근지역에 소재한 군시설(벙커, 초소, 훈련장 등)로 군부대 이동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li> <li>사업부지 주변 여건에 의해 소음・빛 공해・분진・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 식재 및 조경 시설물,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 철도, 통행로, 재활용 창고, 급・배기 시설, 실외기실, 공용 시설물 등)</li> </ul>
	학교	<ul> <li>초등학교는 원 통학구역인 (가칭)운정4초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며, 향후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따라 (가칭)운정4초의 2026.03월 개교가 불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임시배치될 수 있습니다. 임시배치될 경우 통학대책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배치 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의거 선 지방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근거리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i> <li>고등학교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내에서 선발권과 전학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학교별 정현원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선택에 따라 타시군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li> <li>지구내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파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 용지(유치원 포함)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단지 내·외부 유의사항	단지계획	<ul> <li>단지 차량 출입구는 801동, 810동, 811동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801동 인근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동행에 의한 소용과 야간조명에 의한 빗반사 등 간섭이 있음 수 있으며, 근단생활시설 및 차량주차, 온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불편이 있음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화단보도, 보도, 점자불력 등의 사항은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과 달리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화당차공간은 비상자랑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li> <li>단지 대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자랑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li> <li>단지 대 차량정차공간은 비상자랑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li> <li>먼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유발생 및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자랑에 의한 각종 소유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성 동별, 향별, 충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증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건분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인접 통,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랑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806동, 807동, 808동, 809동, 810동, 811동 일부 라인의 지상 2층 세대는 지만(GL+27.8)과 맞당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참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와 주변도로간 레벨차 및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li> <li>단지와 대한,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주가설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위치 이동 또는 추가설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계단, 경사로 및 열리에 따라서 실사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자리로 보고 설명 보고 불안원소원으로 사용되었으로 함의 보고 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 인료에 있 부색채, 마리과 계획 등은 실제 시점 등도 보건계획보접 등에 따라 업자 분을 등에 따라 선명될 수 있습니다.</li> <li>난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원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 이에 따라 먼치 및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대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문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 이에 때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반점 전 전체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등은 이에 환경을 되었다.</li> <li>반점 시스템을 중요계단, 주차장, 델리베이터의 인송, 속도, 탑승의 등의 안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방법용 (CTV는 주차장, 단기 비용 설계 설계에 대한 보다를 보다 및 보다 및 사업을 되었다.</li> <li>공공원보인 시스템을 함께 및 의료 환경을 받았다.</li></ul>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이 노출되어 인접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피난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최상층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상층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동별 엘리베이터 설치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801동 1·2호 라인, 803동 3·5호 라인, 805동 1·2호 라인, 806동 2·3호 라인, 807동 1·3·5호 라인, 808동 1·2호 라인, 809동 1·2호 라인, 810동 1·2호 라인, 811동 2·3호 라인 지붕층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본 공사시 위치 변경 가능)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사용이 불가하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므로 내부 집기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출입동선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출입구의 위치, 출입을 위한 복도, 지하 주차장 방면 출입구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빛반사,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홍보물,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단지주변 지상에 설치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인접되어 설치 및 미관상 저해될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륵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춬입구를 제외하 보행춬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단지 동측 대지경계선 일부에 옹벽 및 방음벽 설치가 계획 [총 길이] 약 227m. 단지 동측 40m 도로에서 바라본 총 높이 : 약 10m(옹벽 노출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획으로 인해 807동, 808동, 809동, 810동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기준 충족을 위하여 추후 방음벽의 개구부, 높이, 위치, 디자인,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방음벽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에 미치는 조망권, 일조권 및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등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되는 방음벽의 유지/보수/관리주체는 입주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 "옥외안테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 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803동 2호 라인, 806동 1호 라인, 808동 2호 라인, 810동 2호 라인, 811동 1호 라인 지붕층 및 808동, 809동 지하1층 제연훼룸에 "이동통신중계장치", 803동 2호 라인, 806동 1호 라인, 808동 2호 라인, 810동 2호 라인, 811동 1호 라인 지붕층에 기간통신사업자용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이고, 인접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6동 3호 라인 지붕층에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이고, 인접 세대의 경우 해당시설로 인한 소음, 전파발생, 빛반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아래와 같이 위치하여 세대별 접근거리가 상이하며, 인접 세대에서는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실(802동), 작은도서관·스터디라운지(803동), 주민회의실·다함께돌봄센터(804동), 경로당·게스트하우스(810동), 맘스스테이션(811동)은 해당 동 지상 1층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807동 서측, 806동 북측)은 지하 1층 주차장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 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 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 IoT호환이 되는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 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l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지상1층~지하1층 총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는 단지 서측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806동~811동은 지상1층~지하1층, 801동~805동은 지하 1층으로 접근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동 주차의 형평성 및 주차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은 지상 1층, 지하 1층이며, 외부에서 접근되는 주차장은 단지 내 단차로 인해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연결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차량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단기의 기능, 모양, 색상등은 추후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주차장 등의 불편함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상1층 주차장에 집중배치하였으며, 801동~805동 세대의 경우 접근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 기타 장비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에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 기타 장비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차량간 이동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휀 등의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휀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총 40개소(급속 10개소, 완속 30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과 충전시설 이용 방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예정자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은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물고임 또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상1층 주차장에 배치하였으며, 801동~805동 세대의 경우 접근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 각 동별 공용홀에는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무인택배함까지의 접근 거리는 주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 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상1층 및 지하1층 주통로 유효높이 2.7m / 그 외 통로 2.3m이상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이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차량의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지상1층 및 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동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및 배수 트렌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과 E/V홀,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계단실은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지상에 5대(장애인 주차 포함, 전기차 충전시설 없음)의 주차 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7711121114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801동과 802동 지상 1층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바닥마감은 노출우레탄 방수 재질로 빛반사,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이며 인접한 일부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801동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1동 북측 근린생활시설 전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남측으로 단지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서측 근린생활시설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01동 서측 21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1동 1층 근린생활시설 지붕을 일부세대의 전유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부 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별		• 801동 북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 글 유의사항	801동	• 801동 남측 A47BL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110		• 801동 동측 근린생활시설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01동 1층 일부구간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801동 전면에 차량 주출입구 및 진출입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1동은 지상 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1동 전면 및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1동 근린생활시설 지붕층과 인접한 1호라인 2층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지붕층과 침실 창틀의 단차는 580mm, 근린생활시설 지붕층과 주방창틀의 단차는 250mm로 청약

•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2동 1층 및 인접한 801동 근린생활시설에 의해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2동 남측 근린생활시설 전용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2동 동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2동 서측에 중학교, 근린생활시설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02동 서측 21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02E	• 802동 동측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바닥분수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802동	• 802동 1층에 다목적실이 계획되어 있어 다목적실용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2동은 지상 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2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2동 인근에 추후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2동 동측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 * 6028 용국 자근가 모근모가 될지되어 여덟 현급한 제대는 모음 및 트리에러서 음에 용 용물의 물면임에 있을 수 있으며 배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803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3동	• 803동 서측 중학교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03동 서측 21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3동 남측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바닥분수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3동 1층 일부구간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803동은 지상 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3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3동 1층에는 작은도서관, 스터디라운지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3동 동측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조망간섭 및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03동 남측 야외운동시설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03동 북측 수경시설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03동 동측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3동 동측 보행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4동 동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4동 서측 중학교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04동 서측 21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4동 동측 수경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4동 1층에 주민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4동	• 804동은 지상 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4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4동 인근에 추후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4동 동측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805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5등 국극 영활패기물 보편꼬가 될지되며 이에 따른 조용 전급, 함세, 꼬름, 문전 전통 등으로 전한 피에가 될정될 수 있습니다.   • 805동 서측 중학교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ᅇᄼᅮᄃ	• 805동 서측 중역표 계획구시가 뒤지어고 있으며, 동시에 따는 모음, 눈전, 전통 등의 피에가 발생할 수 있고, 왕우 모양진입 및 사망활염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05동 서측 21m 도로, 북측 보행자전용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805동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5동 남측 수경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5동 동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5동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805동 북측 A19BL 계획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05동은 지상 1층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5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6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6동 동측 40m 도로, 북측 보행자전용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6동 서측 수경시설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6동 남측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806 <del>동</del>	• 806동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008	• 806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6동 북측 및 남측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조망간섭,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06동 지상 1층 일부구간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 일부라인은 지면(GL+27.8)과 맞닿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6동 인근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 807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7동 동측 40m 도로, 북측 보행자전용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7동 남측 주민운동시설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7동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807동 북측 A19BL 2026년 3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07 <del>동</del>	• 807동 지상 1층 일부구간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 일부라인은 지면(GL+27.8)과 맞닿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7동 인근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807동 동측 옹벽 및 방음벽 설치가 계획[총 길이 : 약 227m, 단지 동측 40m 도로에서 바라본 총 높이 : 10m(옹벽노출면 : 4m, 방음벽 : 6m)]되어 있으므로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옹벽 및 방음벽의 높이는 측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07동 북측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808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8동 동측 40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8동 남측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8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8동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지면(GL+27.8)과 맞닿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222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8 <del>동</del>	• 808동 인근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808동 동측 용벽 및 방음벽 설치가 계획[총 길이 : 약 227m, 단지 동측 40m 도로에서 바라본 총 높이 : 10m(옹벽노출면 : 5m, 방음벽 : 5m)]되어 있으므로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옹벽 및 방음벽의 높이는 측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08동 북측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808동 동측 산책로가 조성되어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8동 남동측 보행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809동 북축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9동 동측 40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9동 북측 어린이놀이터가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9동 서측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09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09동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지면(GL+27.8)과 맞닿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809동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09동 인근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809동 동측 옹벽 및 방음벽 설치가 계획(총 길이 : 약 227m. 단지 동측 40m 도로에서 바라본 총 높이 : 10m(옹벽노출면 : 5m, 방음벽 : 5m)]되어 있으므로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옹벽 및 방음벽의 높이는 측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09동 북측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809동 동측 산책로가 조성되어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09동 남동측 보행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10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10동 남측으로 주차장 주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10동 동측 40m 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10동 하부 경로당 및 게스트하우스가 계획되어 있어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10동 남측 A47BL 2025년 6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10동 서측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10동 서측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조망간섭.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810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10동 • 810동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지면(GL+27.8)과 맞닿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10동 인근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10동 동측 용벽 및 방음벽 설치가 계획(총 길이 : 약 227m. 단지 동측 40m 도로에서 바라본 총 높이 : 10m(용벽노출면 : 1m. 방음벽 : 9m))되어 있으므로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옹벽 및 방음벽의 높이는 측정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10동 북측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여건에 따라 인접한 자전거 보관소 개소가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810동 동측 산책로와 외부계단이 조성되어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10동 동측 보행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11동 북측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11동 북측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바닥분수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11동 남측 A47BL 2025년 6월 입주예정으로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조망간섭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811동 1층 일부구간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811동 서측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11동 남측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조망간섭,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811동 • 811동 인근에는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의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11동 지상 1층 일부구간은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2층 일부라인은 지면(GL+27.8)과 맞닿은 층으로 통합로비를 이용해 진입하는 구조이므로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11동 인근 단지내 레벨차로 인하여 경계부위 난간등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811동 1층 맘스스테이션 전면 드롭오프존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811동 동측 40m 도로, 북측 보행자전용도로에 인접하여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11동 동측 보행육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통	<ul> <li>•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안목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본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장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동체감지기는 2층, 3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됩니다.</li> <li>•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와 E/V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총간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li> <li>•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욕실은 시스템욕실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마감재 설치위치, 재료, 디테일,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욕실 특성상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합니다.</li> <li>• 세대욕실 배관은 층상배관(당해층 배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적용위치 및 설비방식은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욕실의 시스템욕실 공법적용에 따라, 바닥/벽체등의 충격을 울림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욕실의 시스템 욕실 공법 적용에 따라, 입주시 설치 된 양변기 / 세면기의 위치는 설치면 보강이 되어있고,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욕실의 시스템 욕실 공법 적용에 따라, 입주시 설치 된 양변기 / 세면기의 위치는 설치면 보강이 되어있고, 임의로 위치를 이동시 바닥 및 벽체의 파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ul>
단위세대 유의사항	평면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검지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은 통파 등의 우려로 인하여 배수구가 미설치되며,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주방 씽크장 등 고정 가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배막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배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됩니다.  - 욕실 배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편. 천정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 하항식 피난구 부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항식 피난구로 인해 충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항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 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항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항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할새 시 대대학 수 있는 하항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축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하항식피난구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중감될 수 있으며, 사용,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욕실 직배기 시스템 적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서 창문 개방 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샷시, 유리의 사양 및 형태는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 및 발코니는 비 단열 공간으로 세탁실 등에 설치된 수전, 배수관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창호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도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 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B, 84C 타입의 경우, 설계 구조상 다용도실에 별도의 창호가 시공 되지 않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픈발코니 출입을 위한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오픈발코니 외곽에 난간이 설치되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 출입 도어의 규격 및 사양, 설치높이, 재질 및 색상, 마감 등은 본 공시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도어 개폐로 인한 공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가 접한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 및 드레인은 천정,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픈발코니 • 오픈발코니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층에 따라 위치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C/D/E • 오픈 발코니 바닥은 타일로 마감됩니다. 본 공사시 바닥타일은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타입) 수 있으며 구배시공으로 인해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오픈발코니의 타일마감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녹화 마감 등)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오픈발코니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 74C, 74D, 74E타입은 오픈발코니 유무 및 층별에 따라 창호 크기 및 형태, 외부출입문(안방 및 침실) 추가 혹은 변경 등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홈페이지 및 견본 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워홬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단위세대 내 타일,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천연자재(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의 특성 상 실 시공 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 자재의 특성 상 실 시공 시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웤,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주택법」제54조 제7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일부 가스배관은 주방 다용도실 내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통해 인덕션을 설치한 세대의 경우에도 세대 내 가스배관은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기계 • 세대 내 환기장치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세대분전함의 경우 가구 및 창고 등 내부에 설치 불가함으로 복도, 침실, 거실 등 노출되는 부위에 설치되어 미관상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혹통의 위치 및 개수 등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홍보물 관련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공급안내, 홈페이지, 분양자료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와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 도서,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세대 난간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및 기타 마감재(안방, 침실 벽체 판넬)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 마감 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활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실제 시공 시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견본주택에 세대 내 설치된 전기기기 및 설비기기는 실시공 시 제품 사양,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 형태 및 지붕 모양 등)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달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영상은 분양승인 전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온수 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배관, 후드 렌지,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X

#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대상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7년 04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연체발생 시 연체료 포함)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맘스스테이션,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실, 스터디라운지, 주민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룸 등),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 통로 2.7m, 그 외 통로 2.3m
-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 높이 : 지상1층 및 지하1층 2.7m

### ■ 내진 성능등급 표시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동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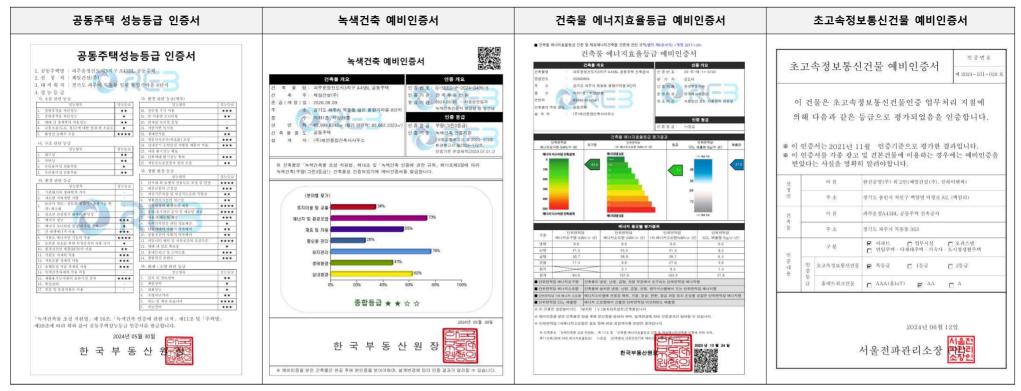
구분	내진능력(MMI 등급)
메르칼리 등급	VII-0.204(g)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기계님ㅁ 서게기즈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저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ģ	남목	공종	금액	항	목	공종	금액	항	목	공종	금액
		택지매입원가	69,637,077,559			철근콘크리트 공사	25,452,446,000			위생기구설비공사	1,026,138,000
FH:	택지비	기간이자	6,222,780,464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002,391,000
백	^  ⊔	필요적 경비	3,634,904,424			조적공사	1,005,002,000		기계	가스설비공사	748,082,000
		그 밖의 비용	9,324,436,553			미장공사	2,139,437,000		년비 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1,002,390,000
		토공사	2,358,339,000			단열공사	936,479,000			특수설비공사	618,454,000
		흙막이공사비	-		건축	방수·방습공사	2,413,529,000	건축비		공조설비공사	404,939,000
		비탈면보호공사	-	- - 건축비 -		목공사	2,718,075,000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8,506,647,000
		옹벽공사	-			가구공사	4,887,966,000			정보통신공사	1,825,977,000
		석축공사	-			금속공사	1,233,411,000			소방설비공사	3,466,076,000
		우수·오수공사	741,736,000			지붕 및 홈통공사	944,093,000			승강기공사	1,398,201,000
	토목	공동구 공사	-			창호공사	4,461,602,000		그밖의	일반관리비	4,920,297,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61,358,000			유리공사	2,832,280,000		공사비	이윤	6,323,450,000
건축비		도로포장공사	836,829,000			타일공사	2,497,279,000			설계비	3,541,000,000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171,169,000			돌공사	2,230,801,000		감리비		3,815,697,437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1,164,889,000	- 간접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2,777,190,275
		조경공사	1,559,547,000			도배공사	1,812,049,000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8,933,995,000
		부대시설공사	1,369,359,000			수장공사	3,487,054,000				-
		공통가설공사	2 922 270 000			주방용구공사	3,943,873,000		フ	타 사업비성경비	7,359,396,779
			2,832,279,000	-		그 밖의 건축공사	1,347,617,000		그	밖의 비용	23,804,931,509
	건축	가시설물공사	1,773,981,000		71741	급수설비공사	1,705,944,000				
		지정 및 기초공사	6,022,400,000		기계 설비	급탕설비공사	1,348,725,000			합계	257,524,000,000
-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640,000,000				

#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1조 제3항, 「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택지비 가산항목 계	10 192 451 670		건축비	가산항목 계	23,805,510,062
_	작사마 가신용국 계	19,182,451,670		법정초과 부	복리시설 건축비	2,108,897,750
	법정 택지이자	6 222 700 464			홈네트워크	4,462,115,350
	비중 국사에서 -	6,222,780,464		인텔리전트	초고속통신특등급	1,112,689,270
	제세공과금	2 624 004 424		설비 공사비	에어컨냉매배관	1,080,776,200
	세세 <u>증</u> 씩 B	3,634,904,424			기계환기설비	2,055,198,660
	말뚝박기 공사비	2 102 225 202	건축비 가산항목 -	공동주택성능등급		3,406,023,026
택지비	글푹ㅋ기 증사미 	3,103,235,39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993,731,413
가산항목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454,499,400
		4,325,598,114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265,012,000
	방음시설 설치비	1,233,757,527			건강친화형주택 (흡착흡방습친환경자재)	4,408,380,770
				사업승인조건	외관특화공사비	1,235,798,310
	지역난방부담금 662,175,748				법정초과 조경시설설치비	606,995,789
				분양보	선증수수료	615,392,124

<sup>※「</sup>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구분	주택건설공사감리	전기감리	건축구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상호	㈜바탕건축사사무소	㈜조은엔지니어링	제이앤씨글로벌㈜	㈜티에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태연엔지니어링㈜
 금액	₩ 2,114,794,000 원	₩ 604,323,437 원	₩ 99,000,000 원	₩ 823,725,000 원	₩ 173,855,000 원

<sup>※</sup>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제일풍경채 운정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4-101-0002300호	206 010 200 000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세 03812024-101-0002300호	206,019,200,000원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중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 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 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11771			
	대표사	구성원(1)	구성원(2)	구성원(3)	시공사
 상호	파주운정45한신컨소시엄	한신공영㈜	제일건설㈜	㈜산하이앤씨	제일건설㈜
주소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45 파주운정신도시3지구 A45BL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248-18-01891 (사업자등록번호)	110111-0075683	135811-0093658	110111-5680502	135811-0093658

#### ■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